

보도일자	배포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11. 14.(수)	담당부서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강성철 (042-481-7870)	담당자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 환급업체가 많은 세관에 전담인력 추가 배치 추진 -**

- 관세청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면서도 원재료의 양(量)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환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관세환급을 포기하거나, 소요량 계산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요청으로 기업들을 지원 지원하기 위해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2018년 7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나, 환급세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환급신청 처리 등 업무에 신설된 사전심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19년 1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전담인력은 소요량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에 심사하여 확정하여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 또한,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의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하여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까지 병행 지원하여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환급업체 소요량 계산 착오 등 주요 애로사례

- * 경기도에서 PE Plastic을 수입하여 PE Pellet을 제조 후 수출하는 A업체는 환급제도를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관세청 및 관할세관의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서 환급제도를 인지하였으며,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소요량 계산 및 환급 신청에 애로를 겪었으나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소요량에 대하여 관할세관의 확인을 받음 (현재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환급신청하고 있음)
- * 충남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B업체는 CHIP에 도포하는 귀금속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① 손모량 중 어디까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산물비율 산정의 어려움, ③ 과다 환급금 추징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및 담당자 책임문제 등의 사유로 수출 물품에 실제 포함되어 있는 양(실량)만 환급신청하고 손모량(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관할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당한환급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
- *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와 3~4개의 하청업체에서 제공받는 원재료를 조립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제공받은 원재료에 대한 거래증명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하고, 필요시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안내)